



요약

최근 보험협회에서는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하였음. 해당 지침에서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 역량 제고를 위한 사항, 금융사고 예방활동 운영기준(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직무분리), 금융사고 취약업무 내부통제 강화에 관한 사항(시스템 접근 통제, 자금거래 통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상시감시 체계 마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침의 준수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각사의 내규를 개정해야 함

○ 보험협회는 최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였음

- 최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하였음
 - 보험업권도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 등 타업권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지침을 제정한 것임¹⁾
 - 해당 지침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30일이며, 보험회사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각사의 내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함
 - 아래에서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지침에서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조직의 구성과 전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관련 업무(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종사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직원(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을 말함)²⁾이 임직원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³⁾ 준법감시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준법감시 전문인력은 ① IT, 회계, 법률,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감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해외 자격증 포함)을 보유하거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직원, ② 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0. 4), “보험산업의 건전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2) 준법감시인 산하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 송무 등 준법감시업무가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외함. 한편 타 부서에서 준법감시를 위한 내부통제, 상시감시 업무 및 법무 관련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음
 3) 다만 총 임직원이 100명 이하인 보험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도 준법감시직원으로 봄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등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직원을 말함

- 보험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직원에 대한 인사 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한편 위와 같은 준법감시직원의 비율(임직원의 1% 이상)과 준법감시 전문인력의 비율(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 요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함

〈표 1〉 인력 총원 관련 경과규정

(단위: %)

구분	2025년 말	2026년 말	2027년 말
준법감시직원 비율	0.6	0.8	1.0
준법감시 전문인력 비율	30	40	50

○ 지침에서는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직무분리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운영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장기근무(동일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는 것)를 하지 않도록 함⁴⁾
 - 고위험업무는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업무로서 ① 소비자와의 금전거래 업무 중 관리가 필요하여 보험회사가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업무, ② 대출, 투자계약 체결 등 자산운용 관련 업무 중 관리가 필요하여 보험회사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업무, ③ 재화·용역의 구매, 부동산임대차 등 외부업체와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자금집행 업무(단, 계약금액 및 체결빈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④ 그 밖에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험회사가 정하는 업무를 말함
 - 부서장 및 임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 소속 직원,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장기근무가 불가피한 직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인사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통해 순환근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순환근무 대상자 중 장기근무 직원이 일정 비율(2025년 말 20% → 2026년 말 15% → 2027년 말 1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및 장기근무 직원 중 직무위험도, 장기근무 여부, 금융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휴가(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대상자에게 검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함) 대상자 및 선정주기 등을 정해야 함
 -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해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⁵⁾ 명령휴가 대상자의 대직자 등 직무검사 담당자로 하여금 명령휴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금융사고 개연성 등을 검사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내부고발담당부서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 직

4)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통제 절차 마련·운영을 조건으로 사전에 내규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업무공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명령휴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직무검사를 실시함

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용역직, 파견직 포함), 보험설계사(전속, 보험대리점 소속 포함)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금융관계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가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등) 내부고발을 해야 함
-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고발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징계를 요청함
-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 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는 고발자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음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위 직무분리기준의 준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함

○ 지침에서는 시스템 접근 통제, 자금거래 통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상시감시 체계 마련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 내부통제 강화에 관한 사항과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함

- 보험회사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 권한 있는 임직원만이 시스템에 접근·요청·승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접근 권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함
 - 임직원은 개인화된 인증방식에 사용되는 인증기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에게 대여·공유하면 안 됨
- 보험회사는 자금거래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자금거래의 입출금 담당자가 거래근거와 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금거래의 입출금 담당자는 자금집행 시 책임자의 결재를 득해야 하고, 지급 대상자와 수취계좌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회사는 거액 송금 기준을 정하고 거액의 자금 송금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책임자 결재를 득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계좌 및 상환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며, 부동산 PF 대출 자금인출 요청서 수신 시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수신, 차주 인감 사전 등록,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등을 통해 자금인출 요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업무 위탁 시 사전에 업무처리 기준(수탁자 임의 선정 방지, 계약의 방법·절차, 수탁업체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탁자로서의 관리조치 등에 관한 내용 포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보험회사는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함
 - 보험회사는 고객 제출서류 진위확인 대상인 금융거래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고객이 금융거래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업무 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본인확인절차(ARS 인증, 공동인증서, 계좌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를 구비하여 실시해야 함
- 보험회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싱, 불법대출 기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본인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해 상시감시를 실시함
 - 이상거래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적용 여부, 보험료 연체 빈도, 고객 연락처 변경주기·빈도, 보험계약대출 신청 및 상환의 빈도·금액, 보험금 지급 청구의 빈도·금액을 참고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감시 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함
 -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부서장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불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업무의 성격 및 내부통제책임 등을 감안하여 본사 부서 및 영업점에 대해 업무별·직급별 책임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구분하여 마련함
 -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총괄부서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 등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함
 - 보험회사의 임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당 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함
 - 전체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관계법령과 내부통제기준을 숙지하여 충실히 준수함
- 보험회사는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발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보험설계사(전속)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기준(범죄유형,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